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
----------	------

발의연월일 : 2020. 7. 6.

발 의 자 : 박대수 · 임이자 · 정경희
윤영석 · 홍준표 · 이만희
이태규 · 구자근 · 김선교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신설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변경신고를 한 자”를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④ (생 략) <u><신 설></u></p> <p>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p>	<p>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u>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⑧ -----</p>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

-----제6항-----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제47조(벌칙) -----

<p>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15조제4항</u>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생략)</p>	<p>----- -----.</p> <p>1. <u>제15조제6항</u>----- -----</p> <p>2. (현행과 같음)</p>
---	--